

2016.06.03

한-중 FTA 협정 적용신청서 사용 안내

관세청 공고 제2016-49호 (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등의 수정, 2016.3.31)에 따라 2016년 6월 1일부터 한-중 FTA 협정관세를 적용 받으려면, <한-중 FTA 협정관세적용신청서> '병지'를 사용하여야 합니다. (문서코드: GOVCBRDHR)

다만 신고시스템 개발 미비 및 입력방법 미숙지 등을 고려하여 **1개월(2016년 6월)간, 기존 협정관세적용신청서와 한-중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필요에 따라 병행**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또한, 한-중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**한-중 FTA 협정관세신청 정정신청서(문서코드 : GOVCBRDHS)**를 사용하여야 합니다.

• **시행일자 : 16. 6. 1.(수)**

일자	한-중 FTA 협정특혜신청양식	문서코드	비고
현재 - 5.31	기존 협정관세적용신청서	GOVCBR5SC	-
16.6.1 - 6.30	기존 협정관세적용신청서	GOVCBR5SC	필요시 "병행"
	한-중 FTA 협정관세적용신청서	GOVCBRDHR	
16.7.1 -	한-중 FTA 협정관세적용신청서	GOVCBRDHR	-

세인 소식지

www.seincustoms.com

2016.06.03

이는 수출자로부터 통보받은 C/O 상 기재 품목과 수입신고서 신고 품목 간의 연계를 통해, 향후 원산지 검증에 있어 효율성을 가지고 자 하는 목적입니다.

별도의 한-중 FTA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신설함으로써, 한-중 FTA 적용 관련 원산지 검증에 대해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바,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세심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.

*** 첨부 : 한-중 협정관세적용신청서 갑,을,병지**

[별지 제16호서식] 협정관세적용신청서

협정관세적용신청서 (갑지)

(처리기간 : 즉시)

(페이지번호/총페이지수)

①수입신고번호 : XXXXX-XX-XXXXXXXX-X

②수입자 : (상호) XXXXXXXXXXXXXXXXXXXX (성명) XXXXXXXXXXXX
 (주소) XX
 (전화번호) XXXXXXXXXXXXXXXXXXXX (FAX) XXXXXXXXXXXX
 (전자주소)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
 (사업자등록번호) 999-99-99999 (통관고유부호) XXXXXXXX-9-99-9-99-9

③수출자 : (상호) XXXXXXXXXXXXXXXXXXXX (국가명) XX (성명) XXXXXXXXXXXX
 (주소) XX
 (전화번호) 999-99-99999 (FAX) XXXXXXXXXXXX

④생산자 : (상호) XXXXXXXXXXXXXXXXXXXX (성명) XXXXXXXXXXXX
 (주소) XX
 (전화번호) 999-99-99999 (FAX) XXXXXXXXXXXX

999란 ⑤신청일자 : YYYY/MM/DD
 ⑥원산지증빙서류 종류 : [X] (1:원산지증명서, 2:사전심사서, 3:동종동질물품)
 ⑦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 : [X] (1:기관, 2:자율(수출자), 3:자율(생산자), 4:자율(수입자)) ⑧원산지 : XX
 ⑨기관명 및 종류 : XXXXXXXXXXXXXXXXXXXXXXXXXXXX, [X] (1:국가기관, 2:상공회의소, 3:기타)
 ⑩발급번호 :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⑪발급일자 : YYYY/MM/DD
 ⑫총순중량 : 999,999,999 XXX
 ⑬적출국 : XX ⑭적출항 :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⑮출항일 : YYYY/MM/DD
 ⑯환적국 : XX ⑰환적항 :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⑱환적일 : YYYY/MM/DD

⑲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국가 : XX ⑳제3국 송품장 발급국가 : XX
 ㉑원산지인증수출자 번호 : XXXXXXXXXXXXXXXXXXXXXXXXXXXX

㉒협정적용 순중량 : 999,999,999 XXX ㉓분할차수 : 999
 ㉔HS부호 : 9999.99 ㉕협정관세율(구분) : 9,999.99(XX XXXX)
 ㉖원산지결정기준 : [X] (A:완전생산, B:세번변경, C:부가가치, D:조합기준, E:역외가공, F:기타, G:자율발급)

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이를 통하여 원산지물품임을 확인하였기 위와 같이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합니다.

협정관세적용신청서 (을지)

(페이지번호/총페이지수)

란번호	001란	002란	003란	004란	005란
⑤신청일자					
⑥원산지증빙서류 종류					
⑦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					
⑧원산지					
⑨기관명					
기관종류					
⑩발급번호					
⑪발급일자					
⑫총순중량					
⑬적출국					
⑭적출항					
⑮출항일					
⑯환적국					
⑰환적항					
⑱환적일					
⑲연결원산지증명서발급국가					
⑳제3국 송품장 발급국가					
㉑원산지 인증수출자 번호					
㉒협정적용 순중량					
㉓분할차수					
㉔HS부호					
㉕협정관세율(구분)					
㉖원산지결정기준					

<신설>

협정관세적용신청서 (병지)

㉗연번	수입 신고		원산지 증명서			
	㉘란	㉙규격	㉚발급번호	㉛행	㉜사용량(중수량)	㉝단위
99999	999	99	XXXXXXXXXXXXXXXX	20	9999999.999	XXX

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 한-중 FTA 체결국으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사용내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※ 한-중 FTA 협정에 따라 신청된 C/O별로 한-중 FTA 특혜적용여부가 중국측으로 통보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